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7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 강준현·김남근·김기표

오세희 • 박용갑 • 채현일

윤건영ㆍ김 윤ㆍ김주영

박희승 · 복기왕 · 이기헌

민병덕 • 이수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 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중 4·19민주혁명회의 경우 4·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 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 에,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 이 위태로운 상황임.

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, 현재 4·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133명에 그치는 실정임. 이는 회원수가 8,900여명인 광복회나 93,000여명에 달 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임.

게다가 일부 다른 보훈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.

이에 4·19혁명에 참여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·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·19혁명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, 4·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제5호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5호 중 "사람"을 "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(미성년자는 제외한다)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,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단체	제3조(회원)		
(이하 "국가유공자등단체"라 한			
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		
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			
다.	<u>.</u>		
1. ~ 4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5. 4·19민주혁명회: 「국가유	5		
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			
법률」 제4조제1항제12호에			
해당하는 <u>사람</u> <단서 신설>	<u>사람과 그 유족</u>		
	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		
	받는 사람(미성년자는 제외한		
	다). 다만, 보상금을 받는 유		
	족이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유		
	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		
	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		
	따른 선순위자로 하되, 순위		
	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		
	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		
	우선한다.		
6 ~ 9. (생략)	6 ~ 9. (현행과 같음)		